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32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도병두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엄셋별 의원

## 1. 제안이유

임산부의 산전, 산후 정신건강 상태는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 뿐 아니라 양육의 질 및 다음 출산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양육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제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산후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u>&lt;신 설&gt;</u></p> <p>6. · 7. (생 략)</p>	<p>제5조(모자보건사업)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임신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u></p> <p>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p>

# 현행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03호, 2023. 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2.>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신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13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03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모자보건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9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상담·교육
3. 산전·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